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01
----------	-------

발의연월일 : 2025. 7. 16.

발 의 자 : 송언석 · 김상훈 · 서지영
박준태 · 고동진 · 최은석
서일준 · 구자근 · 김미애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바이오연료 등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지속가능항공유(SFA)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연구개발이나 사용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을 추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술

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 유망성”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등 미래 유망성”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나. (생략)

2.·3. (생략)

② ~ ⑥ (생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미래 유망성-----

가.·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 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 ----- ----- ----- ----- -----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② ~ ⑤ (현행과 같음)
---	---